

개정 전	개정 후																				
제103조의20(세율)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와 같다. 1. 내국법인(「법인세법」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)의 경우	제103조의20(세율) ① ----- ----- -----. 1. ----- ----- -----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과세표준</th> <th>세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2억원 이하</td> <td>과세표준의 1천분의 9</td> </tr> <tr> <td>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</td> <td>180만원 + (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)</td> </tr> <tr> <td>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</td> <td>3억7천800만원 + (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)</td> </tr> <tr> <td>3천억원 초과</td> <td>62억5천800만원 + (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과세표준	세율	2억원 이하	과세표준의 1천분의 9	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	180만원 + (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)	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	3억7천800만원 + (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)	3천억원 초과	62억5천800만원 + (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)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과세표준</th> <th>세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2억원 이하</td> <td>과세표준의 1천분의 10</td> </tr> <tr> <td>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</td> <td>200만원 + (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)</td> </tr> <tr> <td>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</td> <td>3억9천800만원 + (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)</td> </tr> <tr> <td>3천억원 초과</td> <td>65억5천800만원 + (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과세표준	세율	2억원 이하	과세표준의 1천분의 10	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	200만원 + (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)	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	3억9천800만원 + (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)	3천억원 초과	65억5천800만원 + (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)
과세표준	세율																				
2억원 이하	과세표준의 1천분의 9																				
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	180만원 + (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9)																				
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	3억7천800만원 + (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)																				
3천억원 초과	62억5천800만원 + (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)																				
과세표준	세율																				
2억원 이하	과세표준의 1천분의 10																				
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	200만원 + (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)																				
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	3억9천800만원 + (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)																				
3천억원 초과	65억5천800만원 + (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)																				
2. 「법인세법」 제60조의2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	2. ----- ----- -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과세표준</th> <th>세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200억원 이하</td> <td>과세표준의 1천분의 19</td> </tr> <tr> <td>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</td> <td>3억8천만원 + (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)</td> </tr> <tr> <td>3천억원 초과</td> <td>62억6천만원 + (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과세표준	세율	200억원 이하	과세표준의 1천분의 19	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	3억8천만원 + (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)	3천억원 초과	62억6천만원 + (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)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과세표준</th> <th>세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200억원 이하</td> <td>과세표준의 1천분의 20</td> </tr> <tr> <td>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</td> <td>4억원 + (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)</td> </tr> <tr> <td>3천억원 초과</td> <td>65억6천만원 + (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과세표준	세율	200억원 이하	과세표준의 1천분의 20	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	4억원 + (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)	3천억원 초과	65억6천만원 + (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)				
과세표준	세율																				
200억원 이하	과세표준의 1천분의 19																				
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	3억8천만원 + (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1)																				
3천억원 초과	62억6천만원 + (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)																				
과세표준	세율																				
200억원 이하	과세표준의 1천분의 20																				
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	4억원 + (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)																				
3천억원 초과	65억6천만원 + (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)																				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								